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소정의 참가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자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12 한국국제의료관광컨벤션 - 2012 명품병원·의료관광전시회'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한국관광공사, (주)킨텍스'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고 일주일 이내에 참가비의 50%를 납입함으로써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 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부스위치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순서, 참가비 납입 순서, 전시품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전시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전시장 출입을 제한 한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타 전시자나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시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피해를 줄 경우 주최자는 전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6. 주최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명할 수 있다.
7.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의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 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잔금은 전시 개최 1개월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한 기한내 납불이 없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해약)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시 반환한다.

- 가) 2012. 8. 17까지 취소 : 참가비 총액의 30%(부가세미포함)를 위약금으로 납부
 - 나) 2012. 8. 18부터 2012. 9. 14까지 취소 : 참가비 총액의 50%(부가세미포함)를 위약금으로 납부
 - 다) 2012. 9. 15 이후 취소 : 참가비 총액의 80%(부가세미포함)를 위약금으로 납부
3. 환불이 불가능한 참가비는 차기에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경비로 일체 이월되지 않는다.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의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2.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증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증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증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킨텍스(KINTEX)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 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